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21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8, 14층 (오류동, 디와이빌딩)
대표자 이사 배시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판천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5. 6. 3.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1.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7,129,63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29,6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3. 20. "소외 김●●은 원고에게 6,942,14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08차전590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김●●은 부친인 망 김영구의 사망으로 68,500,000원 상당(2014. 3. 25. 기준)의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법정상속지분인 2/17 소유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는 소외 김●●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다. 소외 김●●은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지분 2/17를 이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홍경자에게 2011. 3. 24.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7. 8. 20. 한국주택은행(합병후 주식회사 국민은행), 국가보훈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1. 1. 11.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5,251,320원, 국가보훈처 2,646,790원이고, 국가보훈처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1. 3. 30.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3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감정인 전태홍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29119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행사 가능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액인 68,5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금액 상당액인 7,898,11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소외 김●●의 소유지분 2/17에 해당하는 7,129,634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7,129,6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망 김영구는 생전에 소외 홍경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사망하였고, 망 김영구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홍경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홍경자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소외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진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2
개나리아파트 제1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11-5-50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5층 제502호 39.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05-2 대 9247.1㎡

대지권의 표시

- 1 소유권대지권 92471000분의 597006

(이상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관할, 흥경자 소유)